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(대안)

의 안 번 호	39
--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98. 11. 2.  
제 안 자 : 김인의원 외 1인

### 1. 대안의 제안이유

기금관련 조례 제·개정시에는 개별 법령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문의 배열 및 형식과 내용이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개정하여야 함에도 현 조례는 이를 충분히 반영치 않코 일부 조항만 개정하여 제출 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 조문 형식을 전부 재배열하여 구성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형식을 변경하고자 대안을 제안

### 2. 대안의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(안 제2조)
- 나.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되 적립기금은 사하구의 출연금, 기금 운용 수익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(안 제3조)
- 다. 운용기금은 구지회 운영지원,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지원, 노인취업 상당일 선, 노인교실 운영, 사회봉사활동 참여지도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며, 기타 사업목적외로 사용금지(안 제4조)
- 라.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함(안 제5조)
- 마.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(안 제6, 7, 9조)
- 바.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, 기금 결산은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(안 제11, 13조)

### 3. 관련법령

- 가.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
- 나. 지방재정법 제29조
- 다.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 조례안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**제 1 조 (목적)**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"사하구"라 한다)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 2 조 (기금의 설치)** ① 사하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사하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,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·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.

**제 3 조 (기금의 재원)**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사하구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기타수입금

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.

**제 4 조 (운용기금의 용도)**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.

1.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(이하 "구지회"라 한다) 운영지원
2.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지원
3.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, 공동작업장 운영지도
4. 노인교실 운영
5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

② 운용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 5 조 (기금의 운용관리)**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-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·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
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.
- ④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.

- 제 6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1. 부구청장, 사회산업국장, 사회복지과장, 구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  2.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4인 및 사하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2인 이내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.
- ⑤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.

제 7 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사항
- ② 기금결산에 관한사항
- ③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8 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 9 조 (위원회의 회의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(3월, 12월)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.
-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0 조 (회의참석 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기금운용의 계획)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 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 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회계담당)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·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.

1. 적립기금운용관 : 사회복지과장

2. 적립기금출납원 :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

3. 운용기금운용관 : 구지회장

4. 운용기금출납원 : 구지회 사무국장

②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기금의 결산)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관계규정의 준용등)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, 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,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.

제 15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